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6일(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4일, 소형준 의원 외 21인 발의
- 나. 회부일자: 2024년 3월 1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년 3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기준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 과 같은 법 시행령 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2024년도 : 월 400천원 × 22명 × 12개월 = 105,600천원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의함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범위가 변경 되었으므로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90만 원에서 120 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총액인 110만 원이 150만 원으로 인상 되어 한달 기준으로 총 22분의 의원님에게 88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 한바.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 5백6십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통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의정활동비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금액의 책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 등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을 통해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제2조제2항 3) 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기준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2024년도 : 월 400천원 × 22명 × 12개월 = 105,600천원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의함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성북구 의회”를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로, “수집·연구”를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북구”를 “성북구의회”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성북구”를 “성북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로 한다.

제4조 중 “의장”을 “성북구의회 의장”으로, “여행할때는”를 “여행할 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할때”를 “할 때”로, “운임(철도)”를 “운임(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를 “할 때”로, “운임(철도)”를 “운임(철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u>성북구 의회</u> 의 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u>수집·연구</u> 에 필요 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u>성북구</u>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 게 지급하며 <u>월 단위가 아닌 경</u> <u>우에는 일할</u> 계산하여 지급한 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 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u>900,000원</u> 으로 하고, 보조활 동비는 월 <u>200,000원</u> 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 <u>성북구의회(이하</u> <u>“성북구의회”라 한다)</u> ----- ----- <u>수집·연구와 이를</u> <u>위한 보조활동</u> ----- -----. ② ----- <u>성북구</u> <u>의회</u> ----- ----- <u>1개월 미만인 경우</u> <u>에는 일수대로</u> ----- --. ③ ----- ----- -- <u>1,200,000원</u> ----- ----- <u>300,000원</u> -----.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 울특별시 <u>성북구</u>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u>1개월</u> <u>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u> 계 산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성북구의회</u> ----- ----- <u>1개월</u> <u>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u>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	제4조(여비의 지급) -----

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u>의</u> <u>장의</u> 명에 의하여 공무로 <u>여행</u> <u>할때는</u>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 을 <u>할때</u>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u>운임</u> (<u>철도</u>, 선박, 항공기, 자 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 분한다. ② 국외 여행을 <u>할때</u>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u>운임</u> (<u>철도</u>,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u>성북구</u> <u>의회 의장</u>----- <u>여행할 때에</u> -----.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 <u>할 때</u> ----- <u>운임</u> (<u>철도</u>----- -----. ② ----- <u>할 때</u> ----- ----- <u>운임</u>(<u>철도</u>----- ----- -----.
---	---